

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(안)

의안 번호	14-73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4. 9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‘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’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사업의 필요성

- 2007. 8. 24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기존의 아현2·3동주민센터와 아현보건분소, 행화구립어린이집의 부지와 부지 내 건물을 조합측 부지인 사업구역 내 공공청사(1부지:2,744.7㎡ 와 2부지:2,200.6㎡) 부지와 상호교환 함에 따라,
- 공공청사-2 신축부지에 지하1층, 지상3층 연면적 4,500㎡ 규모로 도시보건지소, 구립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정보화교육장 등으로 사용될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
 - 도시보건지소는 기존 아현보건분소를 대체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부족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,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아현3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며, ‘갑’ 지역의 부족한 정보화교육장 확보가 필요함. 또한, 어린이집과 정보화교육장은 임대 중에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항임.
 -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암동에 편중하여 위치하고 있어 해당 시설 내에 추가로 건립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, 기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상1층을 육아 관련 시설로 구축하고자 함.

3.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계획

○ 건립개요(안)

- 위 치 : 아현동 615-24 일대 (아현3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)
- 대지면적 : 2,200.6㎡ (665평)
- 토지용도 : 공공청사, 제2종일반주거지역
- 시설용도 : 도시보건지소, 구립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정보화교육장 등
- 건축규모 : 지하1층, 지상3층 / 연면적 4,500㎡

구 분		배 치 (안)	
층 별 현 황	지하1층	1,200㎡	주차장, 환경미화원휴게실, 전기실, 기계실 등
	지상1층	1,200㎡	구립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
	지상2층	1,200㎡	도시보건지소
	지상3층	900㎡	정신보건센터, 정보화교육장, 회의실 등
건축면적		1,200㎡	(건폐율 55%)
지상연면적		3,300㎡	(용적률 150%)

○ 사 업 비 : 11,699백만원

4. 자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비	2014년도		2015년도	2016년도
		시비(보건소)	구비(추경)	구 비	구 비
총 계	11,699,216	286,448	331,192	3,911,144	7,170,432
공 사 비	10,161,000	-	-	3,586,235	6,574,765
설 계 비	617,640	286,448	331,192	-	-
건설사업관리비	892,534	-	-	315,012	577,522
시설부대비	28,042	-	-	9,897	18,145

※ 서울시 보조금 지원 :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2.9억원 지원

※ 구비 114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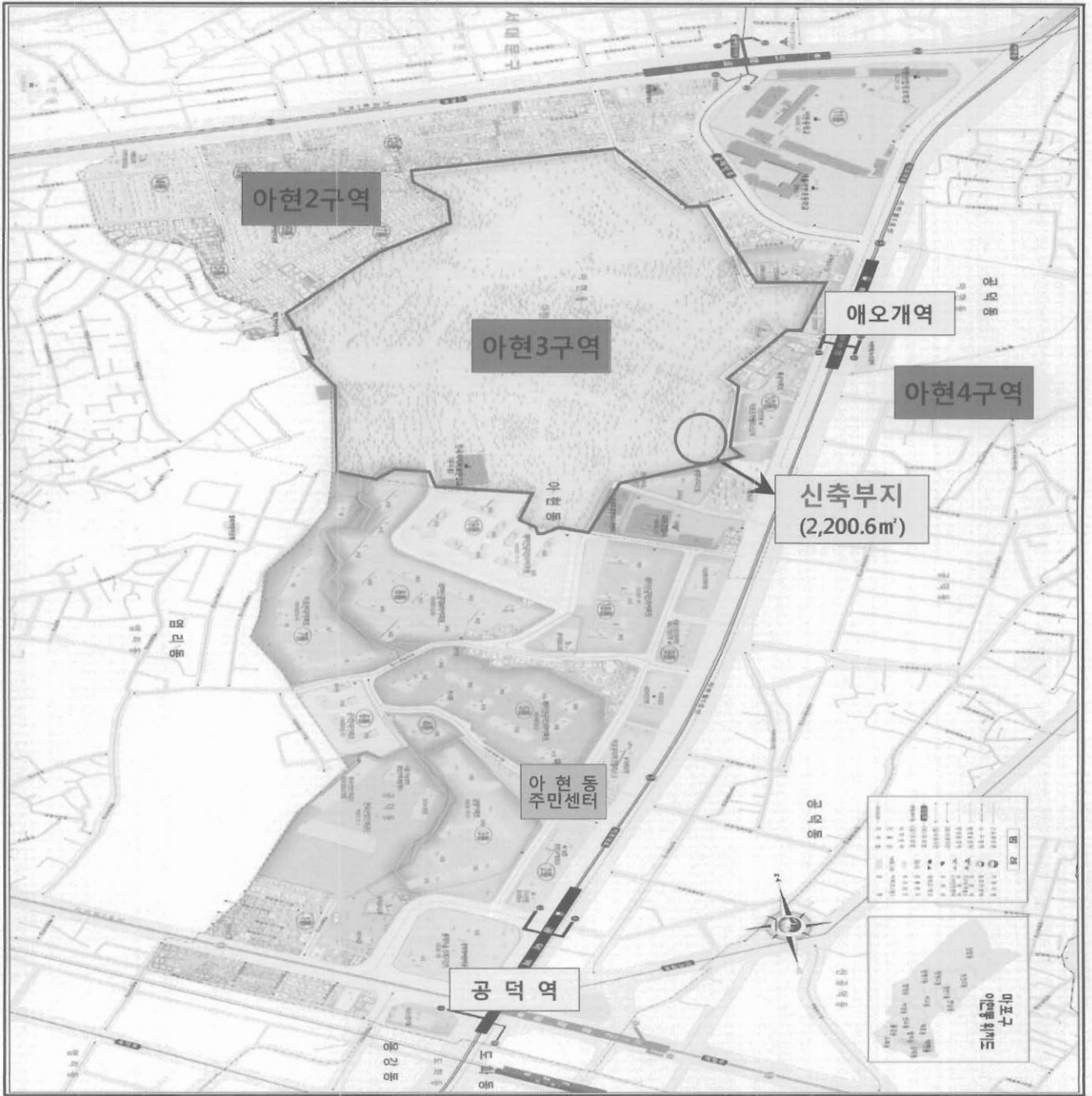
5. 법적 근거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12280호, 2014.1.21) 제39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859호, 2013.11.20) 제36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법률 제12201호, 2014.1.7) 제10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631호, 2013.6.21) 제7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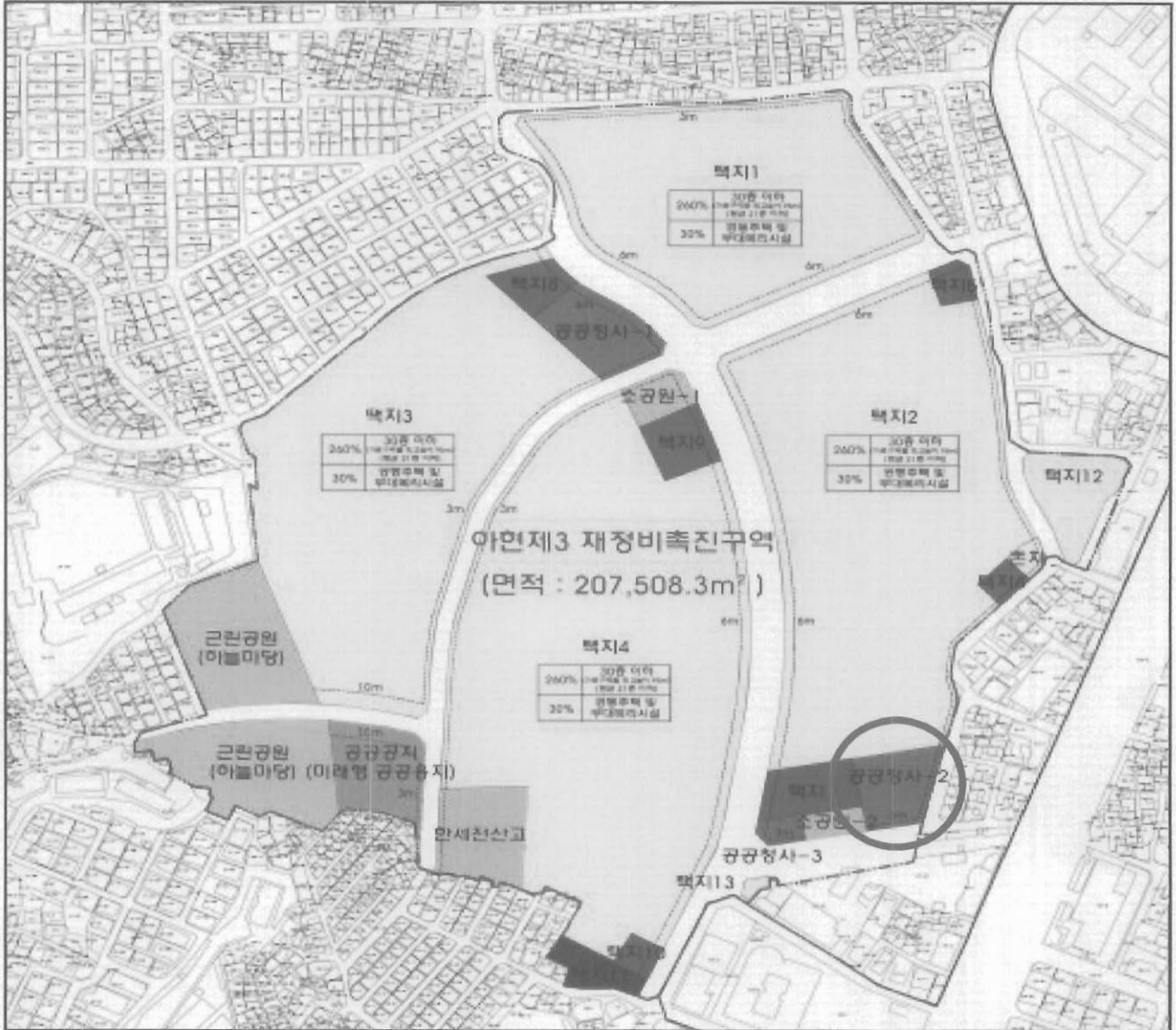
6. 향후 추진계획

구 분	추진 일정	비 고
설계발주 및 설계용역 계약 등	2014. 10 ~ 12	
기본 및 실시설계	2015. 1 ~ 6	
공사발주	2015. 7	
공사완료	2016. 11	

위 치 도



아현3구역 현황도



현 장 사 진



사진설명

건립부지를 위에서 촬영한 사진



사진설명

아현3구역 전경 사진

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11-1)

(단위 :㎡, 천원)

구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	
	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건수	수량	금 액		
취 득	계	토지 건기										
		토지 건기										
		토지 건기										
	1. 매 입	토지 건기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기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 건기										
		토지 건기				1	1	11,699,216	1	1	11,699,216	
	처 분	계	토지 건기									
			토지 건기									
4. 매 각		토지 건기										
5. 양 여		토지 건기										
6. 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기											

201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건물	마포구 아현3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(아현동 615-24 일대)	1 (4,500m ²)	11,600,216 (공사비, 건설사업 관리비, 설계비 등)	2015. 8월 착공 ~ 2016.11월 완공	신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적용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